E - 7 - 2012

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충북대학교 김 두현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정경과

- 2009년 7월 KOSHA CODE 전기분야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BS EN 60903 Specification for gloves and mitts of insulating material for live working
 - IEC 60743 Live working-Terminology for tools, equipment and devices
 - HSG85 Electricity at Work: safe working practices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7 - 2012

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가이드는 전기위험이 있는 전기설비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- (1) 이 가이드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(2) 이 가이드는 전기설비의 설계·명세·선정·설치·시운전·정비 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감독자의 자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3. 정의

- (1)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전기설비(Electrical equipment)"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, 즉 발전·송전·변전·정류·제어·저장·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설비를 말한다.
 - (나) "활선(Live)"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을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.
 - (다) "충전(Charge)"이라 함은 설비가 활선상태이거나 전력시스템에서 격리되었다 하더라도 정전유도 또는 잔류전하에 의하여 전하가 충전된 상태를 말한다.
 - (라) "정전(Dead)"이라 함은 설비가 '활선' 또는 '충전'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.
 - (마) "자격자(Qualified person)"라 함은 서면으로 특정 책임 및 의무를 지도록 사업주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 임명된 사람은 교육과 자격증 또는

E - 7 - 2012

경험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
- (바) "격리(Isolate)"라 함은 전기설비가 기타 전기에너지원과 접속되지 않고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, 우연히 충전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접속이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.
- (사) "고전압(High voltage)"이라 함은 교류 1,000V 또는 직류 1,500V를 넘는 전압을 말한다.
- (아) "활선작업(Live work)"이라 함은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, 기구·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.
- (자) "정전작업(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)"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·점검·수리·도 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.
- (차) "단로기(Disconnecting switch)"라 함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절연거리를 제공하는 기계적 개폐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 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전기의 위험성과 전기설비 사용시의 안전

4.1 전기의 위험성

- (1) 전기에너지에 의한 감전이나 화상으로 인한 재해는 그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일단 발생하게 되면 치사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. 또한 전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.
 - (가) 전기는 형체, 소리는 물론 냄새도 없기 때문에,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 (충전부)을 외관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.
 - (나) 사고 발생시에는 판단에 의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.
- (2) 단락사고로 인해 전기아크가 발생하는 경우,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고온의 열에 의한 화상재해 또는 강한 자외선 방사에 의해 눈이 손상될 수 있다.

E - 7 - 2012

- (3) 전기아크·과열 및 누설전류는 화재나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다.
- (4) 전기사고는 다음과 같이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서 작업(이하 "활선작업"이라 한다.)을 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(이하 "활선근접작업"이라 한다.)하는 중에 발생된다.
- (가)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인가된 경우
- (나) 전압이 인가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업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거나,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적절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

4.2 전기설비 사용상의 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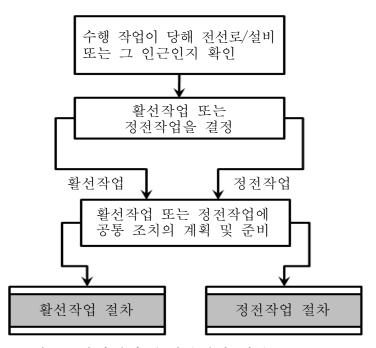
- (1)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 또는 화상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히 설계·제조·설치 및 정비하여야 한다.
- (2) 감전 또는 화상재해 방지조치가 없는 전기설비의 사용자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3) 노출형 배전반·퓨즈반 및 배전용 철 구조물 등의 설비들은 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보안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. 이러한 설비에는 불의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사용전압이 낮은 저압설비는 도체가 과열되어 전기아크나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
- (5) 물기·습기 또는 분진 등 전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존 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비의 선정과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6)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7) 설비는 주의 깊은 설계 및 선정, 이격거리의 확보, 연동장치의 채용 등에 의하여 작동상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E - 7 - 2012

- (8) 제어반은 시운전, 고장부위 찾기, 교정 등의 작업 시에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절연된 도체와 덮개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9) 설비 내에 전원선과 제어선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

- 5.1 안전작업 지침의 평가절차
 - (1) <그림 1>은 작업계획수립 단계의 평가절차를 나타낸 것으로, 이 절차는 다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.
 - (가) 활선작업과 정전작업에 공통되는 조치에 대한 평가
 - (나)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의 결정에 대한 평가
 - (다) 정전작업에 대한 평가
 - (라) 활선작업에 대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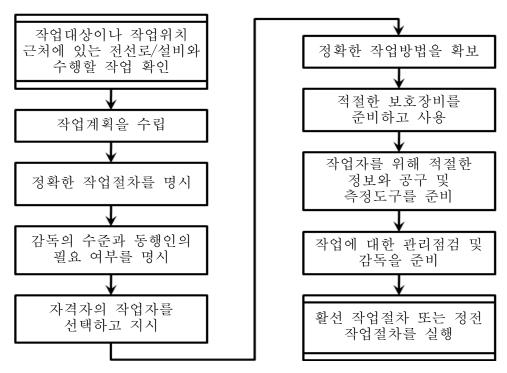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작업계획 수립단계의 기본흐름도

KOSHA GUIDE E - 7 - 2012

5.2 활선 및 정전작업에 공통되는 조치에 대한 평가

<그림 2>는 활선 및 정전작업에 공통되는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.



<그림 2> 활선 및 정전작업에 공통되는 조치에 대한 평가 계획

5.2.1 관리감독자의 행동

- (1) 안전작업계획에는 관리자 및 작업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.
- (가) 관리와 감독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, 작업자가 모두 행하는 경우도 있다.
- (나) 도급을 줄 경우 작업개시 전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정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작업의 관리감독은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상황과 기술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.
- (가) 감독자는 전기안전 지식이 있어야 하며 책임과 의무는 사업주에 의해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- (나) 감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사항에 대해 명 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E - 7 - 2012

- (다) 여러 그룹이 작업에 투입된다면 감독자는 그룹의 작업을 조정하고,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감독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여야 한다.
- (라)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문제 발생시 조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. 그룹작업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체 감독책임을 주고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그 내용을 인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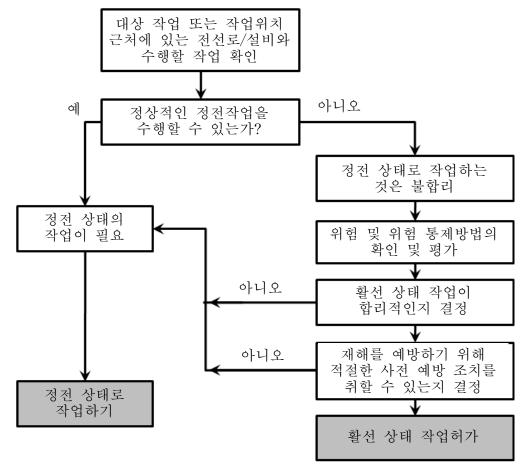
5.2.2 활선 또는 활선근접작업이 이루어질 전선로 또는 설비의 확인

- (1)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소요 시간은 작업 전에 취하는 조치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. 이때 안전작업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.
- (가) 현장 확인, 작업관련 도면 및 정보
- (나) 4.2항에서 언급된 전기설비 사용상의 안전
- (2) 작업 대상기기와 작업내용 확인시 활선상태로 할지 정전상태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가) 활선작업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.
- (나) 자세한 사항은 5.3항에 기술하고, 정전 또는 활선작업에 관계없이 5.2항의 공통되는 조치는 준수하여야 한다.

5.3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의 결정을 위한 평가

<그림 3>은 활선 또는 정전작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이다.

E - 7 - 2012



<그림 3> 활선 또는 정전작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

5.3.1 정전작업의 가능여부 결정

- (1) 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.
- (가) 감전재해는 정전시킬 수 있는 기기에서 활선작업을 하면서 발생한다.
- (나) 철저한 작업 계획 및 프로그램은 정전작업을 가능하게 한다.
- (2)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서 활선 작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 이중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활선작업은 허용되지 않고 정전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가) 정전작업이 모든 상황에서 불합리하다.
- (나) 활선작업 또는 활선 근접작업을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다.

E - 7 - 2012

(다)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(필요시 방호장비를 갖추는 것을 포함) 사전 예방조 치를 취한다.

5.3.2 정전작업이 불가함 결정

- (1) 정전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.
 - (가) 제어 캐비닛의 시운전시(활선상태가 필요함)
 - (나) 고장 난 설비의 고장부분을 찾고자 할 때
- (다) 정전시에 다른 수용가에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
- (2) 활선작업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규정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.

5.3.3 위험의 확인·평가와 관리방법

- (1) 활선 또는 근접작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기기에 필요한 (정성적)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평가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작업자의 적합성 및 위험회피 능력 도 알아야 한다.

5.3.4 활선작업의 불가피성 결정

- (1) 활선작업에 앞서 관리감독자는 각 단계에서 평가된 제반 상황이 적합한지 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(2) 활선작업의 결정은 경제적 및 운용적인 인자와 활선작업의 치명적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5.3.5 예방조치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결정

활선작업은 관련 규정을 만족하고 확인된 위험으로부터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이때 다음 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E - 7 - 2012

- (1) 전위차가 있는 두 부분에 작업자가 동시 접촉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임시 절연 또는 방호책을 강구해야 한다. 이는 절연을 충전부 또는 0 준위를 갖는 부분에 시행하는 것으로서, 공구·전선 등으로부터 갑작스런 단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.
- (2) 활선 근접작업(예; 가공선 인근)에서의 근원적인 예방책은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이다.
- (3) 작업자는 활선작업에 적합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.
 - (가) 작업자는 작업내용은 물론 절차에서 벗어나거나 기기의 불안전한 상태를 인식하여야 한다.
 - (나) 작업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하며, 자신의 능력범위 이외의 작업 에서는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(4) 활선작업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조명이 있어야 한다.
 - (가) 적정한 상부 공간이 있어야 하며 작업자의 걸림 위험요소와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.
 - (나) 415 V에서는 충전부로부터 최소 915 mm의 이격 공간이 필요하며, 양쪽에 충전부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차폐하되 이 경우의 최소 작업공간인 1,375 mm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5) 절연된 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(가) 공구는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절연되어야 하며, 자격 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.
 - (나) 절연이 손상된 공구는 불용 처리되어야 한다. 시험 장비는 절연된 탐침 자(Probe) 및 퓨즈로 보호되는 리드 선을 갖추어야 한다.
- (6) 충전부 또는 대지와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절연용 보호구 및 장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이를 자격자가 검사하여야 한다.
- (7) 큐비클 등 내부의 공간이나 돌출부가 공구나 기타 장비의 임시 보관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
E - 7 - 2012

(8) 감전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. 활선작업자는 안 전한 상태에 있는 동반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여, 필요시 전원의 차단과 같 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.

5.3.6 작업계획수립

- (1) 감전재해는 사전 계획의 미흡 때문에 발생한다.
- (가) 안전한 작업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격을 갖춘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체계에 달려 있다.
- (나) 전기에 대한 무모함은 부상, 사망 또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.
- (2) 안전한 전기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스템 및 수행작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.
- (가) 신설되는 전기시스템(또는 새로 설치되는 전기기기)의 경우, 설계와 관련된 도면 및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, 필요시 작업자에 의해 갱신되어야 한다.
- (나) 도면 및 명세표 형태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. 기록이 부실한 기존 설비의 경우, 그 설비에 대한 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.
 - ① 설비의 조사, 시험 및 명판을 포함한다. 이것은 작업 전에 설비 등에 대한 문서를 점검할 때 명판과 같은 한 가지 정보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
 - ② 모든 기기에는 필요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해 적절히 인식되는 명판이 있어야 한다.
- (3) 계획에는 작업의 관리감독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가) 간단한 작업이라 해도 작업 전 및 진행 중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나) 계획에는 작업 책임자에 의한 훈련을 포함시켜야 하며, 다음의 5가지 중 요한 인자가 고려되어야 한다.
 - ① 수행할 작업
 - ② 작업대상 시스템 또는 기기의 위험요소
 - ③ 작업자 및 필요한 감독 수준

E - 7 - 2012

- ④ 취해야 하는 예방조치
- ⑤ 채택된 작업방법
- (4) 계획된 작업은 특성상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.
- (가)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단계에서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점(예; 시험으로 고장 상태확인)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포함시켜야하다.
- (나) 작업자는 변경된 환경을 인식하고, 필요시 작업을 중지하여 책임자와 상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.
- (다) 고장난 전기설비를 정비하면서 발생되는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, 고 장정비 중에 실시하는 고장탐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5.3.7 작업체계의 구체화

- (1) 전기작업이 수행되는 곳에는 규칙 및 절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.
- (가) 시스템은 문서화되고, 관련된 모든 작업자가 내용을 인지하여야 한다.
- (나) 구체화의 정도는 주위환경에 따라 다르다.
 - ①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간략한 방법을 제시(예; 전기작업시 항상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며 절대 활선작업은 금지한다.)
 - ② 단순한 명령문 형태로 보완
 - ③ 크고 복잡한 전기시스템의 경우 관련 안전원칙이 명확하게 이해되도 록 체계적으로 접근한 안전규칙의 마련 등
- (다) 안전규칙은 작업자가 지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- (라) 기기의 특정부분에 대한 안전작업 상세절차 또는 특수 환경 하에서의 상 세절차는 필요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작성한다.
- (2)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작업 중에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작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.
- (가) 작업자는 새로운 작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.

E - 7 - 2012

(나) 작업자는 변화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.

5.3.8 관리감독 구체화 및 동료 작업자의 필요성 여부

- (1) 작업체계에서는 필요한 감독의 수준, 즉 어느 정도의 교육과 경험을 가진 작업자를 필요로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.
- (2) 활선작업은 정전작업에 비해 보다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며, 특히 동반 작업자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.

5.3.9 자격자의 선정 및 교육

- (1) 개별 작업자의 자격 정도는 수행되는 작업종류 및 작업자의 지식, 훈련 및 경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- (2) 교육은 작업별로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, 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.
- (3) 작업자가 추가적인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추가훈련을 하여야 한다.
- (4) 자격자의 작업자는 특정 유형의 작업에 대하여 동반 작업자와 함께 훈련을 받아야 한다.

5.3.10 올바른 작업방법의 확인

- (1) 작업자는 특정작업과 관련된 올바른 작업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작업자의 작업한계와 작업방법,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.

5.3.11 적합한 보호장구의 제공 및 사용 확인

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호장구는

E - 7 - 2012

다음 3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, 이것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의무이다.

- (1) 관련 작업에 적합
- (2)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
- (3) 올바른 사용
- 5.3.12 관련 정보, 기구 및 계측기의 준비와 작업자의 숙지 확인
 - (1) 작업이 계획되었다면, 작업자에게는 정보, 공구, 계측기, 안전설비 및 지침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 - (가) 정보에는 기기·회로의 도면, 제조자의 지침 자료
 - (나) 공구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정비된 절연 공구
 - (2) 정전된 기기에서 작업하기 전에 정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정전확인용 검전기는 감전위험이 없고 사용시 단락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, 적합한 절연과 퓨즈 또는 에너지 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.
 - (나) 검전기는 사용 전후에 시험하여야 한다. 검전기를 시험하는 데 활선회로 가 사용된다면 감전 및 회로 단락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(다) 전선로에서의 예상치 못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검전기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- (라) 오 조작으로 잘못 설정될 수 있는 멀티미터는 정전 검증용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. 회로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계측기는 1년에 1회 이상 검사하고 정상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.
 - (3) 작업 대상 전선로에 접근 또는 개폐조작을 할 경우,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시스템과 작업 이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.
 - (가) 작업자가 2명 이상이라면, 작업책임자의 작업 이해도와 작업자는 책임자 가 부여한 작업만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(나) 작업자는 자신의 직관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.
 - (4)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.

E - 7 - 2012

- (가)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, 점 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(나) 조직에서는 문서화된 안전규정이나 작업의 안전시스템을 정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·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작업이 현장에서 진행 중이거나다른 사업장 안에서 또는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자의 경우 관리·점검이필요하다.

5.3.13 작업의 확인 및 감독에 대한 준비사항

- (1) 활선작업은 아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작업자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(2)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.
- (3) 문서화된 안전규칙이나 작업의 안전시스템과 같은 정기적이고 구조적 관리점검이 필요하다. 특히 작업이 현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다른 소유자의 사업장 안 또는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자의 경우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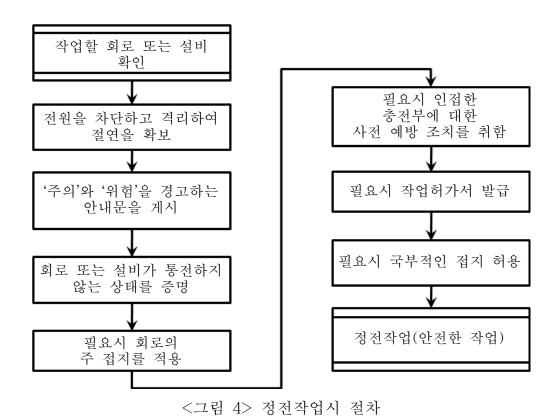
5.4 정전작업 평가절차

모든 상황에서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만,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.(<그림 4> 참조)

5.4.1 확인

- (1) 확인단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.(5.2.2항 참조)
- (2) 전기설비와 전선로에 정확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 그러나 표지가 정확하다고 가정해서는 절대 안 되며, 전기설비 또는 전선로가 정전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KOSHA GUIDE E - 7 - 2012



5.4.2 단로

- (1) 활선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기 전에 모든 전기에너지를 전원에서 차단하여야 한다.
- (2) 전원을 차단한 후, 안전을 위해 정전확인을 위해 5.4.3항~5.4.7항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

5.4.3 절연

- (1) 절연을 확보하기 위해서, 단로기는 예측되는 전압수준으로부터 충분한 절연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스위치 등의 개폐수단이 안전한지를 확인한다. 스위치는 '안전 잠금장치', 열쇠가 있는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오프(OFF) 상태에서 잠겨 있어야 한다.
- (3) 플러그가 뽑혀 있다면, 작업하는 동안 재접속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.

E - 7 - 2012

- (4) 퓨즈가 제거된 경우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치워버리거나 박스나 외함을 잠가둠으로써 퓨즈가 재 삽입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여러 작업자들이 잠금장치를 사용한다면,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잠금장치의 해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
5.4.4 완료 통보

- (1)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나 표지를 정전 작업 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2) 전원 투입시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"주의" 표지를 사용한다. 이것은 설비 와 가까운 위치에 "위험" 표지로 보완하여야 한다.
- (3) 통지나 표시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 시스템의 신뢰를 위해 표지나 통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- (4) "주의"와 "위험" 표지에는 작업자, 책임자의 이름, 연락처, 작업기간 등을 기재한다.

5.4.5 정전상태 보증

- (1) 전선로를 차단하고 연동장치로 분리시켰다 하더라도 작업할 곳이나 근처가 정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설비가 3상 전원이나 하나 이상의 전원을 갖고 있다면 모든 전원공급이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정전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는 검사 전후에 정상 작동하는지를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.

5.4.6 접지

(1) 예방조치가 실패할지라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, 전선로나 설비에 전원

E - 7 - 2012

이 공급되지 않도록 접지장치 또는 접지선을 이용하여 모든 단자를 접지하여야 한다.

- (2) 작업장소가 전원 차단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작업장소에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추가 접지를 하여야 한다.
- (3) 고전압장치와 에너지 축적장치에 접지가 시행되어야 한다. 접지단자와 리드 선은 예방조치가 실패할 경우 흐를 수 있는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4) 다른 사람이 조정하는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재충전 위험이 있는 저전압 설비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.
- (5) 저전압 설비 중에는 인접된 설비의 단락사고로 인해, 접지된 설비가 고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
5.4.7 인접부

- (1) 작업 중인 전선로가 정전되었거나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작업일 때, 인근의 활선 부분과의 접촉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한다.
- (2) 보호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벽이나 임시절연을 하여야 한다. 또한 적절한 작업공간과 출입구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5.4.8 추가적인 조치

고압 시스템과 고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5.4.1항에서 5.4.7항의 모든 조치가 수행된 이후 작업허가서가 발행되어야 한다.

5.4.9 고압 작업에 대한 추가 조치

(1) 추가 조치는 650 V 이상의 전선로에 적용하여야 한다. 그러나 낮은 전압에 서도 심각한 화상을 일으키는 단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,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.

E - 7 - 2012

- (2) 고압 설비는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. 그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점검과 시험은 허용된다.
- (3) 고압은 공간을 통해 아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격이나 화상 재해는 활선 부분의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, 5.4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야 한다.
- (가) 전원분리는 작업수행을 위해 정전부분과 활선부분 사이에 안전한 절연간 격을 가진 장치로 하여야 한다.
- (나) 전원의 차단점에는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고, 작업 위치에서는 추가 접지 도 하여야 한다.
- (다)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설비가 우연히 재 통전될 수 없도록 하나의 열쇠를 가진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 열쇠는 키 세이프나 책임자만 사용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라) 예방조치는 규정에 의한 문서화 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한다. 작업허가에 대한 사항은 5.4.10항을 참조한다.
- (4) 교대나 장기간의 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(5) 고압 활선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설비, 장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압 활선작업이 안전거리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.
- (6) 고압 설비를 시험할 때에도 활선상태의 고압 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.

5.4.10 작업허가

- (1) 전기 작업허가서는 주로 활선작업이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이다.(부록. 참조)
- (가) 허가서에서 주어진 정보는 자세하고 정확하여야 한다. 어떠한 설비 등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,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슨 작업이 완료되었는지를 정확히 나타내어야 한다.
- (나) 허가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설비에서 작업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.

E - 7 - 2012

- 이 제약은 책임자, 감독자를 포함하여 전제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.
- (다)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, 허가서에 작성되지 않은 어떤 작업 도 해서는 안 된다.
- (라) 만약 작업 프로그램이 바뀌는 경우 기존의 허가서는 취소하고 새로운 것이 발행될 때까지 어떤 변경도 하여서는 안 된다.
- (마) 작업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승인하고 새로운 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기존 허가서를 발행한 사람이거나, 마지막 교대나 부재중에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- (2) 작업허가는 기술적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시스템과 장비를 잘 알고 있는 작업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.
- (가) 특정 설비나 시스템에 관련된 허가서 발행은 사업주가 문서로 발행한다.
- (나) 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작업자는 문서로 스위치의 개로, 분리, 정전확인, 개로 잠금, 단락접지 등에 대한 여러 단계를 상세하게 작성하고, 작업 대 상설비와 활선상태로 있는 인근설비를 확인하고 사전 경고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허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.
- (가) 작업허가서가 누구에게 지정되었는지, 즉 작업에 참여하는 그룹이나 작업 단의 리더
- (나) 정전 대상 설비명과 그것의 정확한 위치
- (다) 전선로의 분리점
- (라) 단자가 접지되어 있는 곳
- (마) 주의통지가 게시된 장소와 특수 잠금장치의 설치 장소
- (바) 수행되는 작업의 내용
- (사) 작업허가에 따른 다른 위험원의 존재
- (아) 작업의 과정 중 상세한 예방조치
- (4) 작업영역을 보여주고,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가서에 도면을 첨부하거나 참고자료를 포함한다.
- (5) 전기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작업허가서가 발행되어야 한다.

E - 7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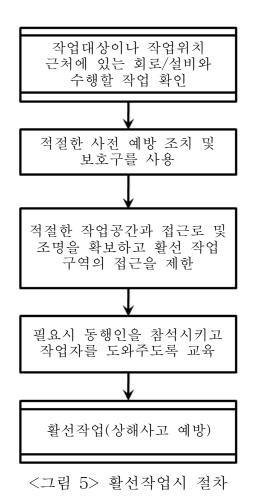
- (가) 허가서를 발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업을 설명 하고 작업자들과 세부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동의하여야 한다.
- (나) 허가서를 발행하는 사람은 설비가 안전하도록 하는 모든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.
- (다) 일반적인 규칙 중에서 다음의 경우 예외사항이 필요하다.
 - ① 전력회사와 수용가 설비와 같이 어느 정도의 책임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, 공동 작업계획에서 지명된 사람과 설비 보유자에 의해서 연서 된 작업허가서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도급자가 발주자의 전력시스템이나 설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다. 이런 경우에 발주자는 분리된 책임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작업완료 전에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(6) 허가서를 받은 사람, 즉 작업자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예방조치들을 지키고 허가된 작업, 허가된 장소에 국한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. 만약 허가 가 작업책임자에게 발행된다면 그 책임자는 모든 작업자에 대한 책임을 받 아들이는 것이다.
- (가) 만약 허가서를 발행한 사람이 작업자라면, 다른 사람이 예방조치가 되었는지 감시를 하여야 한다.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가서를 발행하되, 완전한 안전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허가서 수령인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, 우연한 취소와 설비의 재 통전을 막기 위해 참고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이 완료되면 추가 접지와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에서 철수하고, 설비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은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- (가) 허가서 담당자는 설비가 적절하고 작업이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- (나) 허가서는 설비에 재송전하기 전에 말소를 위해 원래 발행한 사람에게 반 환한다.
- (8)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을 때 기존의 허가서는 취소하고 필요한 새로운 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E - 7 - 2012

- (가) 작업허가서의 일시중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.
- (나)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구와 추가 접지를 철거하고, 모든 사람이 작업 허가서가 일시 중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면에 의한 절차가 필요 하다.
- (9) 작업허가 시스템은 안전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서를 갖고 있도록 하는 추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. 감시는 허가서 발행에 관련되지 않는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, 불합리한 습관과 부정확함을 확인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진행되어야 한다.

5.5 활선작업 평가절차

활선작업에 대한 평가절차는 <그림 5>에 나타나고 있다.



- 21 -

E - 7 - 2012

- (1) 활선작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작업으로 제한된다.
- (가) 고압설비에서 활선작업이 불가피한 검사 등
- (나) 저압설비에서 활선작업이 불가피한 전압 측정 등
- (다) 이 지침서에 기술된 엄격한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활선 근접작업
- (2)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다음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한다.
- (가) 보호장구의 사용과 유의사항
 - ① 5.3.5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적절한 절연 도구의 사용은 5.3.5항 및 5.3.12항을 참고한다.
 - ② 공구와 표시기에 대하여는 5.3.12항을 참고한다.
 - ③ 고압 활선작업을 위해 필요한 몇몇의 예방조치는 5.4.9항을 참고한다.
- (나) 적절한 작업공간, 출입통로 및 조명의 제공과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
 - ① 5.3.5항(4)호의 요구사항을 참조한다.
 - ② 활선작업시의 작업공간에 권한 없는 사람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.
 - ③ 작업장소에 작업과 관련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울타리나 밀폐함 등이 있으며, 그 외부에는 경고내용을 부착한다.

(다) 동반 작업자

- ① 활선작업에서 동반 작업자는 안전작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하며, 감 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.
- ② 동반 작업자는 전원을 내리는 방법과 필요하다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.
- ③ 동반 작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직원의 접근을 제한시킨다.
- ④ 동반 작업자는 경험이 적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.

KOSHA GUIDE E - 7 - 2012

<부록> 작업허가서의 예

1. 발행 작업책임자에게
본인은 다음과 같이 고전압 설비의 전원이 차단되고 모든 활선부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접지되어 있음을 확인함.
모든 다른 설비 및 위험한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◇ 설비는 다음의 위치에 접지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.
<u> </u>
◇ 전기 차단 위치 :
◇ 주의 통지 게시 위치 :
◇ 잠금 장치 설치 위치 :
◇ 작업 내용 :
도면 도면
서명: 날짜: <u>0000년 00 월 00일</u> 시간: <u>00시 00분</u> 작업 허가서(앞면)

KOSHA	GUIDE
E - 7	- 2012

2.	수령증	
과	본인은 작업허가용으로 위 작업 수행 책임을 수락하며, 다른 설비나 장소에서 본인본인 담당의 작업자가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임.	
	서명 : 날짜 : _0000년 00 월 00일 시간 : _00시 00분_	
	주의 : 본 허가서는 접수란에 서명한 후 작업이 완료되고 정리 부분에 서명할 때까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의 작업 책임자가 보관해야 합니다.	
3.	정리	
	이 작업허가서는 발행된 작업은 <u>일시중지 / 완료</u> 되었고 본인 담당의 모든 작업자가수했고 더 이상 이 작업허가에 대한 설비에서 작업하지 않음을 확인한다.	
 ◇ 모든 장비와 장치는 제거 되었습니다. ◇ 부가적 접지는 제거되었습니다. * 적용되지 않는 말은 지우고 적절한 상태로 하십시오. ◇ 작업은 다음과 같이 완료 / 미완료 되었습니다. 		
_		
	서명 : 날짜 : <u>0000년 00 월 00일</u> 시간 : <u>00시 00분</u>	
4.	취소	
0]	작업 허가서가 취소되었습니다.	
	서명: 날짜: <u>0000년 00 월 00일</u> 시간: <u>00시 00분</u>	
	작업 허가서(뒷면)	